##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헌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603 발의연월일: 2021. 7. 20.

발 의 자:이헌승·김도읍·진성준

하영제 · 이양수 · 이종배

백혜련・金炳旭・송언석

박 진ㆍ이주환ㆍ김영진

정동만 • 문정복 • 김정호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

정부는 2007년 공항철도를 시작으로 GTX, 신분당선 등 다수의 민 자철도 사업을 추진·운영 중임.

민자도로는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민자도로 운영 및 유지·관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를 지정·운영하고 있으나 민자철도는 타 철도와의 연계, 철도차량 운행 등으로 인해 민자도로 보다 사업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·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으로 사업별 협약에 근거하여 운영 및 유지·관리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 유지·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, 민자철도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며,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를 지정·운영하는 등 민자철도의 관리·감독체계를 강화하고 법 위

반 시 행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- 가. 민자철도와 관련한 정부와 민자철도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정부는 민자철도 유지·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, 민자철도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함(안 제25조).
- 나. 민자철도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관리·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5조의2 신설).
- 다.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비율 등이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른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와 달라지는 경우 국토교통부가 그 사유의 소명 등을 민자철도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, 실시협약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민자철도 관리지원 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민자철도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5조의3 신설).
- 라. 정책변경, 법령개정 등으로 발생하는 민자철도사업자의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25조의4 신설).
- 마. 민자철도의 효율적인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 관이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부정하게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5조의5 신설).

법률 제 호

###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장의2 민자철도의 감독 · 관리 등

제2장의2에 제25조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(민자철도의 유지·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고속철도,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로서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라 건설된 철도(이하 "민자철도"라 한다)를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자(이하 "민자철도사업자"라 한다)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·관리 및 운영을 할 수있도록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② 민자철도사업자는 민자철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준수하여야한다.

- ③ 국토교통부장관는 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의 유지·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소관 민자철도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민자철도 에 관한 유지·관리 및 체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⑤ 민자철도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⑥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절차,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5조의2(민자철도 관리·운영을 위한 과징금 처분)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민자철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  - 1.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철도의 유지·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
  - 2. 제25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
  -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25조의3(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) ① 국토교통

부장관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철도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철도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.

- 1. 민자철도사업자가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7 호에 따른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. 다만,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.
- 2. 민자철도사업자가 주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한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
- 3.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되는 등 실시협약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민자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 5조의5에 따른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- 1. 민자철도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

- 2. 민자철도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 우
- 3.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으로는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없거나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요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지급금,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25조의4(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)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의 변경 또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민자철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25조의5(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 자철도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민자철도 관리지원 센터(이하 "관리지원센터"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  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  - ② 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

- 2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검토·평가,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자문 및 지원
- 3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과 관련된 자문 및 지원
- 4. 민자철도의 교통수요 예측, 적정 요금 또는 운임 및 운영비 산출 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
- 5.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의 유지·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
- 6.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
- 7.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」 제26조에 따른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·검토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
- 8. 그 밖에 민자철도에 관한 감독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	제2장의2 민자철도의 감독ㆍ관리
		<u> </u>
<u>&lt;신 설&gt;</u>		제25조(민자철도의 유지·관리 및
		운영에 관한 기준 등) ① 국토
		교통부장관은 「철도의 건설 및
		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
		률」 제2조에 따른 고속철도,
		광역철도 및 일반철도로서 「사
		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
		법」에 따라 건설된 철도(이하
		"민자철도"라 한다)를 같은 법
		제26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설
		정받은 자(이하 "민자철도사업
		자"라 한다)가 안전하고 효율적
		으로 유지·관리 및 운영을 <u>할</u>
		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여 고시
		하여야 한다.
		② 민자철도사업자는 민자철도
		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
		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
		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준
		수하여야 한다.
		③ 국토교통부장관는 제1항에
		따른 민자철도의 유지·관리 및

<신 설>

<u>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</u> <u> 소관 민자철도에 대하여 운영평</u> 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민 자철도에 관한 유지·관리 및 체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.
- ⑤ 민자철도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 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.
- ⑥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절차,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  제25조의2(민자철도 관리·운영을 위한 과징금 처분)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·징수할 수있다.
  - 1.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
     자철도의 유지·관리 및 운영
     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
     니한 경우

<신 설>

- 2. 제25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 금의 징수 및 용도 등에 관하여 는 제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5조의3(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 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) ① 국 토교통부장관은 중대한 사정변 경 또는 민자철도사업자의 위법 한 행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철도사업자에게 그 사 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1. 민자철도사업자가 「사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

에서 정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 만으로 변경한 경우. 다만, 같 은 조 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 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 경우 는 제외한다.

- 2. 민자철도사업자가 주주로부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을 초과한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
- 3.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되는 등 실시협약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민자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 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의5에 따른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있다.

- 1. 민자철도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
- 2. 민자철도사업자가 제2항에따른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아니한 경우
- 3.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으로 는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 할 수 없거나 해소하기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요구 조 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정 부지급금, 실시협약에 따른 보 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25조의4(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)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의 변경 또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민자철도사업자가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5조의5(민자철도 관리지원센

<신 설>

<신 설>

터의 지정 등)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민자철도에 대한 감독 업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민 자철도 관리지원센터(이하 "관 리지원센터"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
- 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- ② 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

   투자법」 제7조에 따른 민간

   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

   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
- 2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」 제13조제2항 및 제3 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검토· 평가,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 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자문 및 지원

- 3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」 제9조제2항 및 제3 항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 안과 관련된 자문 및 지원
- 4. 민자철도의 교통수요 예측,
   적정 요금 또는 운임 및 운영
   비 산출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
- 5.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의 유지·관리 및 운영에관한 기준과 관련한 자문 및지원
- 6.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영평 가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
- 7.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」 제26조 에 따른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・검토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
- 8. 그 밖에 민자철도에 관한 감독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지원 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지원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업무를 수행한 경우